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6월 30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월 29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6. 29.(화)	담당부서	중견기업정책과
담당과장	심진수 과장(044-203-4360)	담 당 자	이효은 사무관(044-203-4362)

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

-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확대,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등 「중견기업법」 개정('21.6.15 공포, 9.16일 시행) 후속조치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 **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**을 **6월 30일부터 입법예고**한다고 밝힘 (기간 : '21.6.30일~8.9일)

○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,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, 중견기업의 '영리성 요건' 명확화 등 **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**('21.6.15 공포, 9.16일 시행)에 따른 **후속조치**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

❶ **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**을 기존 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**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**하는 것으로 **법률을 개정**함에 따라 **시행령 내 관련 규정*** **삭제**

* (현행)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규정

❷ 「청년고용촉진특별법」에 따른 **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**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**중견기업까지 확대**하는 것으로 **법률을 개정**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를 **'매출 3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'으로 정함**

❸ **중견기업의 요건 중 '영리성 목적'을 명확화** 하기 위해 시행령 내 관련 규정 정비

-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"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아닐 것"을 규정하고 있어, **「민법」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·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**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이를 해소하고자 **법률에 '영리성 목적'을 명시**하고 **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**

□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**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**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**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**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

□ 산업부는 9월초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**9. 16일부터 시행**할 계획임

【붙임】 :「중견기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문 (별첨)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이효은 사무관(☎ 044-203-43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